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가단508977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국중권, 허기원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윤옥

변론 종결2022. 5. 18.

판결 선고2022. 6.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90,9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대 증거가 없다.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래 등기가 차례로 마쳐져 있다.

1	소유권이전	2005. 11. 17.	2005. 9. 12. 매매	공유자C 지분 2분의 1D 지분 2분의 1
2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	2017. 1. 5.	2017. 1. 4. 신탁	수탁자 주식회사 E
3	소유권이전	2019. 2. 13.	2018. 11. 28. 매매	소유자 피고
4	소유권이전	2019. 2. 13.	2019. 2. 13. 신탁	수탁자 H) 2020. 1. 22. 상호가 H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이하 'H'이라고 줄여 쓴다.

② D는 2017. 4. 3.경 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도 같다)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7. 9. 11.경 G로부터 합계 3,998,872원을 대출받았다.

③ 원고는 F와 G의 D에 대한 각 대출금채권을 직접 또는 1차 채권양수인인 F로부터 다시 양수하였다.

2. 쟁점 및 판단

원고는, D와 H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D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이 신탁법 제8조 제1항 본문의 사해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D에 대한 양수금채권자의 지위에서, 수탁자인 H을 상대로는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양수금채권액 20,090,958원의 범위에서 2017. 1. 4.자 신탁계약의 취소를 청구하고, 전득자인 피고를 상대로는 원상회복으로서 양수금채권액에 해당하는 가액배상을 청구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害)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다. 사해행위로 인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害)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신탁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사해신탁의 취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기초사실에 근거하면, 원고가 취소채권자로서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원고가 사해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2017. 1. 4.자 신탁계약 이후에 성립하였음이 분명하다. 원고는 2017. 1. 4.자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임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현종

별지

1) 2020. 1. 22. 상호가 H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이하 'H'이라고 줄여 쓴다.